㈜우리금융지주-우리벤처파트너스㈜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(내국법인用-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

※ 내국법인(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)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가액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(상세내용은 본문 참조).

[유의사항]

- 1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2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, 세무신고·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1-628-6480(우리벤처파트너스㈜ IR부)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가. ㈜우리금융지주(이하, "지주") 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㈜(이하, "벤처파트너스") 주식의 포괄적 교환(이하, "본건 포괄적 교환")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9.9% ~ 26.4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나. 상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총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지주 주식수와 지주 주식의 본건 포괄적 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.
- 다.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(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4 개월 이내)에 본 건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2. 증권거래세 과세

- 가. 본건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,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(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격)을 의미합니다.
- 나.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Ⅱ.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

- 가.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9.9% ~ 26.4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나. 상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,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벤처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는 벤처파트너스 주식 1 주당 가액입니다.
- 다.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(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4 개월 이내)에 본 건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2. 증권거래세 과세

- 가.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(위 제 1 항 참조)의 0.35%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.
- 나.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